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

▶ 시행 2014.2.14
[대통령령 제25161호, 2014.2.11., 일부개정]

【제·개정이유】

【일부개정】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전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특정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이 개정(법률 제12048호, 2013. 8. 13. 공포, 2014. 2. 14. 시행)됨에 따라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, 구제역, 돼지열병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5종의 가축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메추리와 꿩을 가축전염병 관리 대상 동물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〈법제처 제공〉

【제·개정문】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4년 2월 11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

○대통령령 제25161호

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”을 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”을 “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”을 “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메추리

4. 꿩

제3조의2제2항 중 “시·군”을 “특별자치시·시(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∴ 축산법령

④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서 “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”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.

1. 구제역
2. 돼지열병
3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
4. 브루셀라병(소의 경우만 해당한다)
5. 결핵병(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)

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, 예방 및 방역조치,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법 제5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제1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제4호의3 및 제4호의4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32조제1항 단서”를 “법 제32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4의2.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

4의5.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·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·조사

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사무

별표 2 제2호너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부과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너.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	100	200	300

부 칙

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